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간 등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기간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 신고 기간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상항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 제1항)

다.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설정(안 제10조제2항)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을“(진상규명 신고 절차·방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유족 대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③ (생략) ④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법 제3조제7항-----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 제4항까지에서 ---

현행	개정안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u>제4항</u>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u>제5항에</u>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u>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u>) ① ~ ⑦ (생략) <u><신설></u>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u>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u> 해야 한다. ③·④ (생략)	----- <u>제3항-</u> ----- <u>제4항에</u> ----- ----- ----- -----. 제8조(<u>진상규명 신고 절차·방법·기간</u>)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u>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u>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1